

『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라 체계적·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2011년 개정된 수련 시설 사용료 기준을 현재 물가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신설(안 별표 1~4)
 - 명칭과 위치, 휴관일, 사용시간, 시설 사용료 신설
- 구미시 청소년문화의집 평일 운영시간 조정(안 별표3)
 - (기준) 11:00 ~ 20:00 / (변경) 10:00 ~ 20:00
-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조정(안 별표4)
 - 식비 1,000원/1식 인상, 시설이용료 500원 인상(물가반영)
- 구미시 해평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조정(안 별표4)
 - 식비 1,000원/1식 인상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<강동청소년문화의집> 신설에 따라 운영 세칙을 정하고, <구미시 청소년문화의집>의 운영시간 및 선산·해평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<강동청소년문화의집> 사용료는 타 지자체의 동일 시설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며, 선산 및 해평 수련시설의 사용료 인상안도 <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>를 원활하게 통과하였음.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